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자치단체별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 8. 31까지 행정자치부장관과 기한 연장협의(2003. 2. 28 → 2003. 8.31).
-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게 '02. 10. 1일자로 권한 위임된 사무중 일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함에 따른 추가인력 보강

□ 주요 내용

- 기한연장 : 2003. 2. 28 ⇒ 2003. 8. 31(6개월)
- 직렬·직급별 초과현원 66명 ⇒ 43명
 - 부칙 제3조 2항 개정(제497호)
- 정원조정 (+1) : 1,331명 → 1,33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09명 → 1,310명

□ 참고 사항

- 도 행정 12200-10258(2003. 2. 14) 정원불부합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통보
- 도 행정 12200-10317(2003. 2. 27)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재위임에 따른 인력 추가 보강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중 “1,331”을 “1,332”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1,309”를 “1,310”으로 한다

조례 제497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중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3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497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은 2003. 3. 1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 문 대 조 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원의 총수)구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331명</u> 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309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u>1,332</u> ----- ----- 1 ----- : <u>1,310</u> - 2 (현행 제2호와 같음)
조례제497호 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현행 제1항과 같음) ② ----- 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3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 -----